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
----------	----

2018년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년 8월 16일
- 다. 회부일 : 2018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백 호)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11,117,901천원
(인건비 502,334, 운영경비 394,643, 장학사업비 10,166,142, 성과급 54,782)

나.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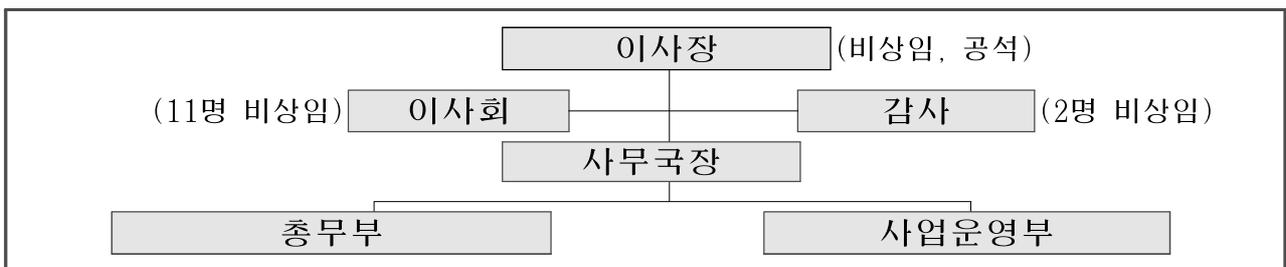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1)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재)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민법」제32조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음.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 서울장학재단은 2010년 출범하여, 이사회(정원13명, 이사장(비상임) 1명(공석), 이사회 10명(비상임), 감사2명(비상임))와 사무국(1국2부, 정원13명, 현원10명)을 구성하여 132억3천4백만원(서울치출연금 115억, 기부금 3억6천만원, 이월금 등 1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현황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서울장학재단의 인력현황 〉

구 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 원	13	1	1	2	4	5
현 원	10	0	1	2	4	3
과부족	△3	△1	-	-	-	△2

- 2018년 예산(132억원, 서울시출연금 115억원) 중 장학사업에 117억원을 편성하고, 2017년 대비 서울시출연 장학사업은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기부금·운영소득 장학 사업은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2018년 서울장학재단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 예산	예산과목		2018년 예산
세입	총 계	13,234,100	세출	총 계	13,234,100
	서울시 출연금	11,518,317		운영비	1,111,208
	기부금수입	363,000		사업비	11,700,362
	전기이월금	1,062,003		예비비 및 기타	422,530
	이자수익	259,530			
	기타수입	31,250			

※ 서울장학재단 기본재산 : 136억원

〈 2017·2018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내역 〉

(단위:백만원)

장학사업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비율
총 계	10,702	11,700	998	9.3%
서울희망대학장학금	4,002	4,108	106	2.6%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	412	412	100%
서울희망공익장학금	345	183	△162	△46.9%

장학사업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비율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1	21	-	-
서울희망고교장학금	5,002	4,573	△429	△8.5%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	1,006	1,006	10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144	105	△39	△27.1%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310	310	0	-
프로그램사업비	-	25	25	100%
정보화사업비	68	173	105	154.4%
청춘start장학금	85	104	19	22.4%
H-jump스쿨장학금	258	131	△127	△49.2%
유영아학업 장학금	46	46	-	-
청춘Dream장학금	60	62	2	3.3%
서울교환학생장학금	-	95	95	100%
오토꿈이름서울장학금	33	33	-	-
청계천꿈디딤장학금	33	53	20	60.6%
서울희망SOS장학금	200	201	1	0.5%
심사 및 선정경비	16	18	2	12.5%
홍보사업비	29	41	12	41.4%
장학개선연구사업비	50	-	△50	△100%

나. 서울장학재단 출연의 적정성

- 평생교육국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우수 학생 발굴·육성을 위한 서울장학재단 운영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체능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2019년 출연금(111억1천7백만원)은 전년(115억7천1백만원)대비 3.9%(4억5천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성과급(1천6백만원)은 증가했으나, 장학사업비(대학생: △2.6%, 1억2천원 / 고등학생: △10.1%, 6억1천2백만원)와 운영경비(△1억9천만원)는 감소하였음.

〈 2018·2019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세부내역	2018년	2019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비율
서울장학재단 운영	11,571,544	11,117,901	△ 453,643	△ 3.9%
사무국운영	1,133,185	951,759	△ 181,426	△ 16.0%
경상운영비	1,133,185	951,759	△ 181,426	△ 16.0%
100 인 건 비	510,594	502,334	△ 8,260	△ 1.6%
200 경 비	583,913	394,643	△ 189,270	△ 32.4%
713 성과급	38,677	54,782	16,105	41.6%
장학사업운영	10,883,381	10,166,142	△ 717,239	△ 6.6%
장학사업비	10,883,381	10,166,142	△ 717,239	△ 6.6%
◎ 대학생 장학사업	4,723,700	4,603,000	△ 120,700	△ 2.6%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4,107,500	4,004,000	△ 103,500	△ 2.5%
서울희망 대학 진로장학금	412,200	411,000	△ 1,200	△ 0.3%
서울희망 공익장학금	183,000	168,000	△ 15,000	△ 8.2%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1,000	20,000	△ 1,000	△ 4.8%
◎ 고등학생 장학사업	6,043,575	5,431,000	△ 612,575	△ 10.1%
서울희망 고교 장학금	4,572,575	4,025,000	△ 547,575	△ 12.0%
서울희망 고교 진로장학금	1,006,000	1,006,000	0	0.0%
서울희망 고교 예체능 장학금	310,000	310,000	0	0.0%
서울희망 하나고장학금	105,000	90,000	△ 15,000	△ 14.3%
◎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	25,000	25,000	0	0.0%
프로그램 사업비	25,000	25,000	0	0.0%
◎ 정보화사업비	116,106	107,142	△ 8,964	△ 7.7%
정보화사업비	116,106	107,142	△ 8,964	△ 7.7%

※ 성과급의 증감사유는 서울장학재단 성과평가 결과 2017년의 성과평가가 2016년 (“다”급) 대비 상승(“나”급)분 반영과 신규인력 채용(3명)분으로 증액편성되었음.

- 장학사업 중 ‘서울희망 공익장학금(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실천적 인재 육성)’은 매년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학사업의 예산 편성액, 대상선정 방식, 지급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희망 공익장학금’의 집행현황 〉 (단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28.기 준
장학사업 평균집행률	93.91%	93.56%	95.71%	61.50%
본사업 평균집행률	78.61%	80.50%	80.39%	1.47%
예산액	354,247	312,000	300,000	183,000
집행액	278,472	251,161	241,167	2,694
집행잔액	75,775	60,839	58,833	180,305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국가 등(교육청, 타기관, 자치구, 민간, 학교 등)의 장학재단 및 장학금의 증가에 따라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이 전년 (60억4천3백만원) 대비 10.1%(6억1천2백만원) 감액된 54억3천1백만원 규모임.
- 조례 개정³⁾을 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중복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산의 불용 등으로 인하여 감액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추후 대학생 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3) 제270회 정례회, 의안번호 1312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차상위계층의 자녀인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석·박사 과정 중 대학원장이 추천한자 →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자

- 장학재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금(장학금 미지급분), 민간기탁금 유치 미흡 등이 지적된바 있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재산의 운영소득 및 기부금 등이 과소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 장학재단의 예산 중 운영소득 및 기부금 등의 비율 〉

(단위:백만원)

	이월금제외 예산액			시출연금	운영소득 및 기부금 등	운영소득 및 기부금 등 비율
	예산총액	이월금	소계			
2015	14,062	2,291	11,771	10,128	1,643	14.0%
2016	12,720	978	11,742	10,156	1,586	13.5%
2017	11,881	438	11,443	9,758	1,685	14.7%

- 통상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운영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은 서울시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본재산 규모의 확대를 통해 출연금(서울시)과 운영소득(기본재산의 운영소득)의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상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⁴⁾, 관련 조례⁵⁾와 서울장학재단 설립시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4)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현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연 도	예산현액	순세계잉여금	비율
2015회계연도	27조 1,121억	2조 3,810억	8.8%
2016회계연도	30조 6,041억	2조 8,726억	9.4%
2017회계연도	32조 9,162억	3조 4,321억	10.4%

-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 ‘서울장학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안)’ 발체 〉

□ 기본재산 — 최종 목표액 500억원

- 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2012년까지 최종 500억원 조성
- 대기업, 독지가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연차별 목표에 의해 점차 확대

* 기본재산 출연규모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출연금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500억

*기부금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지난 3월10일 임기가 만료되어 5개월 이상 공석을 유지하고 있음. 이사장 선임이 늦어는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던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서울장학재단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이사장의 선출과 함께 여타 출연기관과 달리 비상임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사장직을 상임이사⁶⁾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및 출연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규모의 적정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학사업의 개선안 마련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⑤ (생략)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1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11,117,901천원
(인건비 502,334, 운영경비 394,643, 장학사업비 10,166,142, 성과급 54,782)

나.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육정책과 격차해소팀 이진희(☎2133-3946)